



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



수신 수신처참조

(경유)

제목 2023년 상반기 대학강사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신고 안내

1. 귀 대학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국민연금법 시행령」 제2조 제4호 가목 및 나목 개정(시행일 2020. 7. 1.)으로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대학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요건인 “생업 목적” 삭제를 아래와 같이 재안내드립니다.

종 전		개 정
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	→	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

3.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하여 시행일 이후 사업장에 새로 임용되거나 고용되는 경우(재임용되거나 재고용의 경우를 포함)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.
4. 그리고 '20년 7월 1일 이전 임용된 강사 중 ‘타사업장가입자’ 사유로 적용제외 중인 대학강사도 현재 재직중일 경우 ‘본인 희망’ 시 복수 사업장 합산 60시간 이상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고(본인이 공단에 직접 신청),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취득 신청 시 접수일로 적용됩니다.

(예시) 3월 1일자로 취득 희망 시 4월 17일까지 신고하면 소급취득 가능(이후 신청 시 신청서 접수일로만 취득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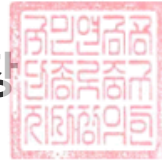
5. 2023년 1학기 위촉 강사 전체 명단을 누락 없이 2023. 04. 17.까지 EDI로 신고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대상자 신고(제출) 방법은 ‘붙임’ 참조

6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(☎02-397-9574 최수진 주임)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붙임 대학강사 신고방법 안내 1부. 끝.

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장



수신처 :

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, 상명대학교총장, 배화여자대학교총장, 송실사이버대학교총장, 고려사이버대학교총장, 동국대학교총장, 송의여자대학교총장, 가톨릭대학교총장, 성균관대학교총장,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

★주임 최수진 차장 김도연 부장 전결3/16 이동희

협조자

시행 종로중구가입지원부-880 (2023-03-16) 접수 송의여자대학교-002137(2023.03.16)
우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, 15층(충무로3가, 남산스퀘어) /
전화 02-397-9574 전송 02-3485-2701 / choisujin1101@nps.or.kr / 공개

수신처 총무처장

접수번호	총무처-23-00265 (접수일자:2023.03.16)	접수일자	2023-03-16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--

	담당	경리과 과장	총무처 처장	총장
결재	박혜진 (03/16)	정지열 (03/16)	김현석 (03/16)	박성희 (03/17)